

2025년 『전북특화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북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 시장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8. 21.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사업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 시장진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내용

사업명	• 2025년 전북특화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
지원규모	• 총114,000천원(금일억일천사백만원)
지원내용	• 기술이전형 민·관·학 공동연구개발(R&D)
지원분야	• 방위산업분야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분야 - (무기체계) 전투 및 작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 - (비무기체계) 전투 및 작전 지원을 위한 시스템
관리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과학기술진흥단 방산안전진흥팀

2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구 분	기술이전형 민·관·학 공동연구개발(R&D)
개요	방위산업분야 무기체계, 비무기체계 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방위산업 수요 기술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u>참여기업에 이전</u>
작성방법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개별 작성
지원금액 (과제당)	114,000천원 이내 (1개 과제)
지원기간	'25. 10. 1. ~ '26. 5. 31. (8개월 이내)
신청자격	[4. 신청자격 및 5. 지원제외 대상 참조]
추진방식	기관주도 컨소시엄 * 주관기관(출연연, 대학, 연구기관 등)-참여기업
지원절차	<pre> graph LR A[공고] --> B[사업계획서 등 온라인접수] B --> C[서류점검 (현장점검)] C --> D[선정평가 (발표)] D --> E[결과안내 및 원가심사] E --> F[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pre>
도비지원기준	총사업비의 80%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기술료 징수	참여기업 도비지원금의 10%(※ 대학, 연구기관 기술료 제외)

※ 지원 프로그램별 선정 규모 및 지원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 분야

□ 방위산업 분류체계상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분야

분류	무기체계	비무기체계
정의	전투 및 작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	전투 및 작전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장비
관련 분야 (예시)	주요 무기(예: 전차, 전투기, 군함)	통신 장비
	지원 장비(예: 레이더, 전자전 장비)	의료 장비
	소프트웨어(예: 사격통제 시스템, 미사일 유도 시스템)	군수지원 시스템
	탄약 및 미사일	정보처리 및 분석 시스템
	지상 무기(전차, 장갑차, 대포)	훈련 시스템(시뮬레이터, 교육 장비)
	공중 무기(전투기, 폭격기, 무인항공기)	기지 지원 장비(전력 공급 장비, 환경 제어 장비)
	해상 무기(군함, 잠수함, 해양 드론)	수송 장비(트럭, 수송기)
	유도 무기 (미사일, 유도폭탄)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건설 장비, 유지 보수 장비)
적을 무력화, 파괴 또는 억제하는 기능	작전의 효율성 증대, 지원 및 유지 보수 기능	

4

신청자격 ※ 지원자격 미충족시 지원제외 됨

□ 주관기관: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정부출연(연), 연구기관, 대학 등

□ 참여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한 기업으로
아래 각 호를 충족하는 기업

①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장 소재 기업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충족 시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 예정인 기업

※ 설립 예정기업 중 본 사업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연구소기업은 위 기준을 면제함

5

지원제외 대상

- 주관 및 참여기업으로 신청한 기업이 최근 2년('23~'24년) 연속,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
(단,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월만 적용)

[지원가능여부 예시]

구 분	유동비율		부채비율		지원여부
	'23년	'24년	'23년	'24년	
A기업	49%	47%	300%	400%	X
B기업	55%	60%	550%	650%	X
C기업	20%	75%	600%	320%	O
D기업	100%	40%	400%	540%	O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주관 및 참여기업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에서 제작된 제품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최근 결산기준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
- 주관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 8. 21.(목) ~ 2025. 9. 18(목), 16: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온라인 접수 : <http://rnd.jbtp.or.kr> (전북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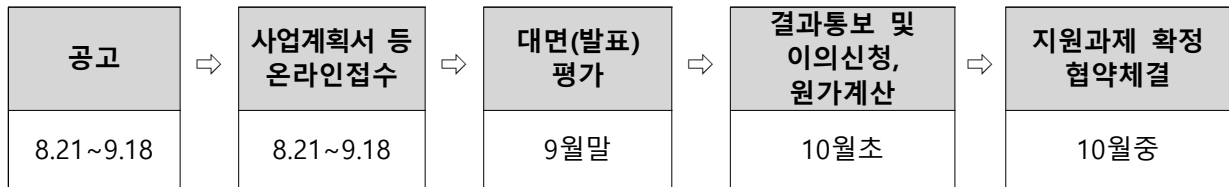
※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전북테크노파크 R&D관리 홈페이지] 참조

※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

□ 관련문의 : 전북테크노파크 방산안전진흥팀 김진원 선임연구원

(☎ 063-260-9341, e-mail : kjw@jbtp.or.kr)

□ 평가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 <http://rnd.jbtp.or.kr> 에서 다운로드)

No	제출서류	기술개발	비고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2	사업자등록증 1부	○	
3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1부	○	
4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1부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6	최근 2년간('23~'24) 결산확정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	
7	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및 제반서류	○	
8	산출내역 증빙자료(도면 및 견적서, 비교견적서)	○	
9	기술이전 의향서 1부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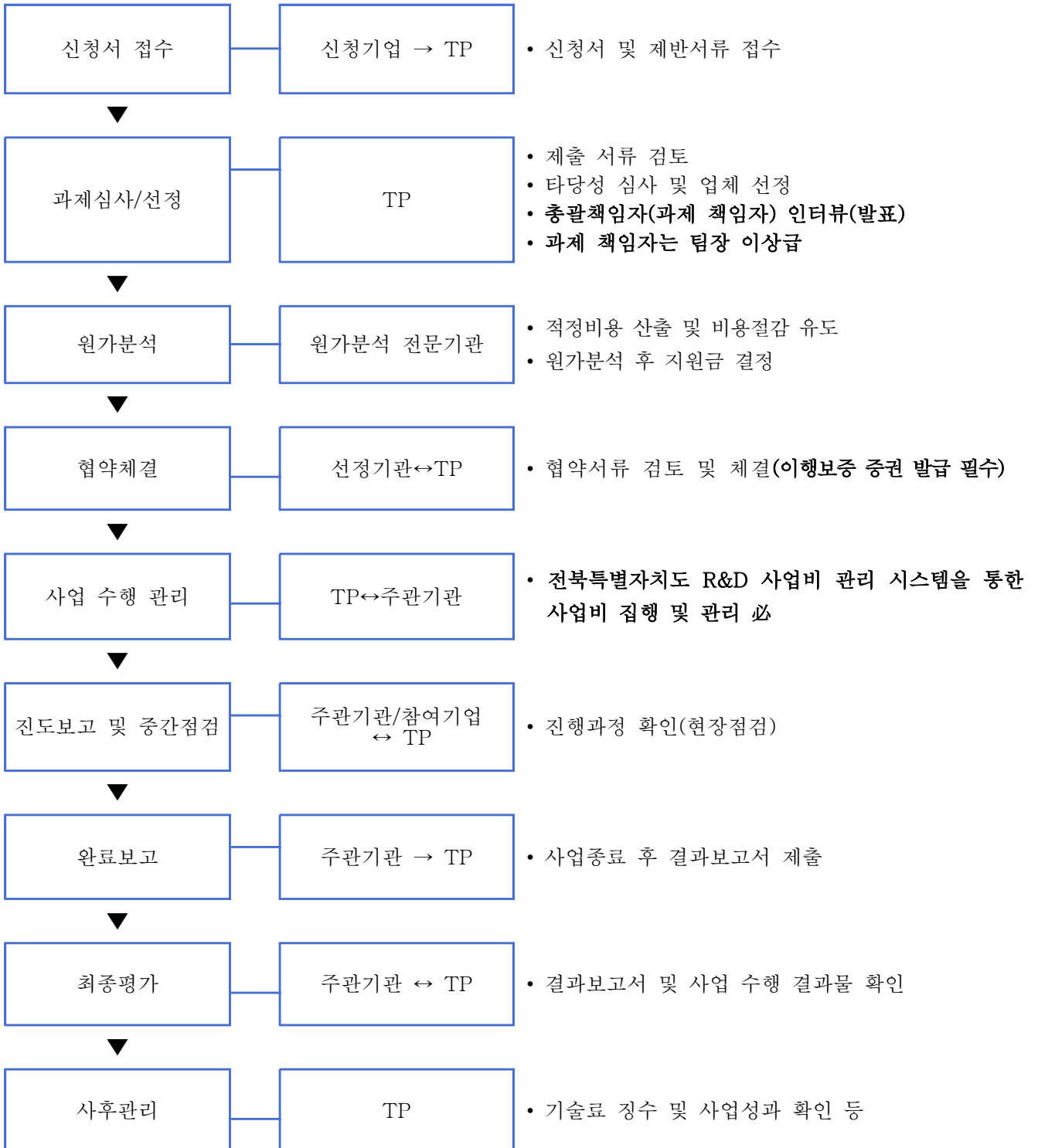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기술성, 사업성 및 계획의 적정성, 기여도 등

검토항목	평가지표	세부내용
I.사업 추진체계 (30점)	추진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참여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추진체계의 연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II.기술성·사업성 및 계획의 적정성 (50점)	기술개발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적절한가? ○개발결과와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기술적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기술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III.기여도 (10점)	지역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IV. 사업비 (10점)	사업비 편성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평가지표는 지원사업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 상기 절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의사항

- 공공재정환수법 :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20.1.1. 시행)
-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본 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준수하오니 사업 신청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